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훈 자진 반납 허용〉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5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회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훈자가 서훈 반납의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서훈 반납의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규율하는 법으로,¹⁾ 헌법상 대통령의 영전수여 권한²⁾에 따라 훈·포장의 수여·취소 절차를 정하고 있음.³⁾

1) 「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서훈을 특별한 공적에 근거한 고도의 일신전속적 영예이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⁴⁾ 이에 따라 서훈은 개별 수훈자의 명예를 넘어 국가 발전, 건전한 국민정신, 국민 단합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⁵⁾

서훈은 당사자의 동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이 부여된 행정행위로서,

헌행법 제8조제1항은 거짓 공적, 국가안전 관련 범죄, 일정 중범죄 등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훈 취소를 허용함으로써⁶⁾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한편,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유족의 훈장 반납, 광복회의

2) 「대한민국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영전수여

3) 「상훈법」

제7조(서훈의 확정)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용래(서울올림픽기념사업회)

6)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건국훈장을 일괄 반납 결의 사례⁷⁾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특정 사건·정책에 대한 항의나 개인의 양심·가치관을 이유로 서훈 자진반납 의사가 표명된 사례가 존재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수훈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진반납을 서훈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자진반납 수요’가 제도 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정치적·개인적 표현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⁸⁾

이에, 개정안은 “서훈 반납의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서훈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훈자의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서훈 유지 여부에 관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상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훈제도의 권위와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훈의 수여와 취소가 본래 국가의 영예와 국민적 자긍심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취소 사유에 ‘자진반납’을 추가하여 그 요건을 완화할 경우, 서훈이 정권 교체나 사회적 분위기, 개인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따라 부여·반납을 반복하는 ‘정치적 상징물’로 인

7) 연합뉴스, “‘씨랜드’ 희생자 어머니의 훈장 반납”, 1999.8.15.

<https://www.yna.co.kr/view/AKR19990815001800004>

한겨레, “광복회, 건국훈장 반납 결의”, 2008.12.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0302.html

8) KBS뉴스, “국가가 준 훈장 반납한 사람 99년 한 해 동안 49명”, 1999.12.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11797>

식될 소지가 있음.

이 경우 상훈제도가 국민통합과 공적 가치 공유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표출·확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어, 상훈제도의 상징성과 역사적 연속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수훈자의 자발적 의사와 양심을 존중하여 자진반납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과, 상훈의 공적·역사적 의의 및 영예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서훈이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이 부여된 행정행위로서,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훈자의 자발적 의사만으로 서훈을 취소할 경우 서훈의 영예성과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 국가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등급별 명칭

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장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수여대상 :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수여대상 :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수여대상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포장
	수여대상 :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수여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보국· 예비군포장
	수여대상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수교훈장	광화대장,광화장	흥인장	승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수여대상 :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수여대상 :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수여대상 : 새마을운동 유공자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포장
	수여대상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수여대상 : 체육발전 유공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 포장
	수여대상 :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표창 수장



국무총리표창 수장

단체표창 수치



대통령표창 수치



국무총리표창 수치

참고 2

최근 10년간 훈격별 정부포상 현황

(단위 : 점)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16	30,667	16,450	4,425	4,846	4,943
2017	30,732	16,874	4,110	4,885	4,859
2018	31,213	17,033	4,431	4,475	4,394
2019	35,447	19,189	5,496	5,505	5,237
2020	35,867	20,126	5,970	5,488	5,154
2021	36,140	20,522	5,962	4,963	4,686
2022	37,540	21,801	6,410	4,704	4,625
2023	37,019	22,069	5,748	4,653	4,549
2024	37,953	22,876	5,813	4,632	4,632
2025	37,078	23,298	5,103	4,384	4,293
계	349,656	200,238	53,468	48,535	47,372